

「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」 폐지 보고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96 |
|----------|-----|

제안연월일 :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이 제정·시행되어 설립 목적을 달성한 「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」의 폐지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」 개요

- 창립일자 : 2019. 9. 16. ※ 우리 군 고시일 : 2019. 10. 22.
- 설립목적 :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법제화
- 구성현황

(조직형태)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

(대상) 인구 3만명 미만·인구밀도(인구수/km²) 40명 미만인 郡

(회원군) 전국 24개 군

| 연번 | 시도 | 회원군 | 연번 | 시도 | 회원군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1 | 충청북도(1) | 단양군 | 13 | 경상북도(5) | 영양군 |
| 2 | 인천광역시(1) | 옹진군 | 14 | | 울릉군 |
| 3 | 강원특별자치도 (9) | 홍천군 | 15 | | 청송군 |
| 4 | | 화천군 | 16 | | 군위군(부회장) |
| 5 | | 양양군 | 17 | | 봉화군 |
| 6 | | 양구군 | 18 | 곡성군(회장) | |
| 7 | | 고성군 | 19 | 구례군(부회장) | |
| 8 | | 인제군 | 20 | 전라북도(5) | 진안군 |
| 9 | | 평창군 | 21 | | 장수군 |
| 10 | | 정선군 | 22 | | 임실군(부회장) |
| 11 | | 영월군(부회장) | 23 | | 순창군 |
| 12 | 경상남도(1) | 의령군(부회장) | 24 | | 무주군 |

○ 주요 추진현황

- 2019.10. 「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」 창립총회
- 2020. 5. 정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건의
- 2020. 6.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」 발의
 -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 군에 대한 특례 근거 마련
- 2020.12. 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」 통과
- 2021.1.~12.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추진
- 2022. 6.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정
- 2023. 1.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시행 ※ 설립목적 달성
- 2023. 2. (곡성군→회원군) 목적 달성에 따른 협의회 폐지절차 이행 요청
 - 협의회 회원군 의견조회 결과, 24개 회원군 모두 “폐지” 찬성
 - 2023. 11. 기준, 19개 회원군 규약 폐지 완료 ※ [붙임 1] 참고

○ 향후 계획

- 행정사항 처리
 - 협의회 폐지 고시: 2023. 11. 한
 - 협의회 폐지 도(道) 보고 및 곡성군(협의회장) 알림: 2023. 11. 한
- 예산사항 처리
 - 분담금 반납액 수령 및 세입처리: 2023. 12. 한

3. 참고사항

- [붙임 1] 협의회 회원군 현황 1부.
- [붙임 2] 협의회 분담금 관리 현황 1부.
- [붙임 3] 협의회 규약 1부.

붙임 1**「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」 참여郡 (24개)**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 충청북도 > (1)</p> | <p>단양군</p> |
| <p>< 인천광역시 > (1)</p> | <p>옹진군</p> |
| <p>< 강원특별자치도 > (9)</p> | <p>화천군, 양양군, 양구군, 고성군, 인제군, <u>평창군</u>, 정선군, 영월군, 홍천군</p> |
| <p>< 전라북도 > (5)</p> | <p>진안군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</p> |
| <p>< 전라남도 > (2)</p> | <p>구례군, 곡성군(회장)</p> |
| <p>< 경상북도 > (5)</p> | <p>영양군, 울릉군, 청송군, 군위군, 봉화군</p> |
| <p>< 경상남도 > (1)</p> | <p>의령군</p> |

- 파란색 표기: 협의회 폐지 회원군
- 빨간색 표기: 협의회 미폐지 회원군

붙임 2**협의회 부담금 관리 현황**

○ 부담금 운영 및 분배

- 운영기간: 2021. 11. 10. ~ 2023. 2. 22.
- 납부금액: 회원군별 연2,000천원
- 부담금 잔액: 총165,633,380원
- 회원군별 분배금: 6,901,390원 (24개 회원군 동일분배)

○ 부담금 수입·지출 총괄

| 수입 (A) | 지출 (B) | 잔액 (C=A-B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73,725,380원 | 8,092,000원 | 165,633,380원 |

○ 수입내역

| 구 분 | 수 입 액 | 산출기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계 | 173,725,380원 | |
| 인계금 | 125,294,990원 | 충북 단양군 → 전남 곡성군 |
| 협의회 부담금 (2022년) | 48,000,000원 | 2,000천원 * 24개 회원군 |
| 예금이자 | 430,390원 | 2021년~2023년 3년간 |

○ 지출내역

| 구 분 | 지 출 액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8,092,000원 | |
| 2021년 하반기 정례회의 | 기념품 구입비 | 2,128,000원 농특산물 등 홍보물품 |
| | 홍보물품 제작비 | 1,442,000원 현수막 및 식순 등 제작 |
| | 물품 구입비 | 190,000원 수반 및 꽃다발 |
| | 다과 구입비 | 700,000원 행사장 다과 |
| | 식비 | 2,392,000원 오찬 |
| | 숙박비 | 240,000원 숙박비 |
| | 책자 제작비 | 1,000,000원 회의 책자 제작 |

붙임 3

「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」 규약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(郡)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‘특례군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협의회의 명칭은 ‘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’ (이하 ‘협의회’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는 “별표”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
1.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2.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3.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
5. 특례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
6.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

제5조(임원)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.

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1.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.
2.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.
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단,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고,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8조(회장단 회의)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제9조(의안의 제출) ①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안을 제출한 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견의 청취)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(실국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별도 지정)이 되고,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 간사는 회장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제13조(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특례군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에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4조(사무국)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, 사

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.

제15조(수당 등)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경비부담)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액, 납부방법 및 그 밖의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
제17조(회계보고 및 결산) ①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협의회는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8조(규약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9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69조(행정협의회)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75조(협의회)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